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0나6442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0나6442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534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변론종결 2021. 11. 25.

판결선고 2022. 1. 27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가단5345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6. 6. 8. 대부금 46,000,000원, 월 이율 2.3%, 대부기간 2019. 6. 7.까지로 정하여 체결된 대부거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6. 8. 접수 제392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3930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대부거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,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.

2. 원고는, 청구취지 기재 대부거래계약에 관한 약정서(갑 제5호증)는 변조되었고, 위 약정서에 따른 대부거래계약의 실제 채무자는 C인데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,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,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약정서에 따른 대부거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.

위 대부거래계약의 실제 채무자가 C이고 원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, 그리고 이를 피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, 피고가 실제로는 C를 채무자로 할 의사였으면서도 원고와 통정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또한 위 약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약정서가 변조되었다고

보기는 어렵다.

3.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정민, 판사 김정현, 판사 박재성

별지